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3248
------------	------

2025. 12. 1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5. 10. 20. 성흡제 의원 발의 (2025. 10. 23. 회부)

2. 제안이유

-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런 정지 등 고장이 잇따르고 있어,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근거가 없어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예방적 점검과 유지관리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노후 승강기를 정의하고 시장이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승강기 이용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후 승강기”의 정의를 신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제3호 신설).
- 나. 시장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점검주기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노후 승강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상 노후 승강기를 정의하고, 시장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과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노후 승강기”란 법 제32조에 따른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주기,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승강기 수는 17만2천여 대이며, 이 중 설치된지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6만3천여 대로 서울시 전체 승강기의 37%를 차지하는데, 향후 시일이 경과될수록 노후화 되는 승강기의 비율은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서울시 내 승강기 현황(출처: 건축기획과 내부 자료)>

계	설 치 연 도					일반승강기 (2011년 이후 설치)	
	장기사용 승강기 (2010년 이전 설치)						
	소 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2,447	63,551	48,188	5,192	5,063	5,108	108,896	

- 안 제2조제3호는 노후 승강기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설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로 규정하였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에서도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중 다목에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를 정하고 있음.

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2. (생략)

3. <u>정밀안전검사</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u>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u>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안 제2조제3호는 법을 인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 제32조의 하위 항, 호, 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노후 승강기”란 법 제32조 에 따른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 법 제32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 -----.

- 안 제4조의2제1항은 ‘시장’이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이에 따른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사항임.
- 현행 법령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방안으로,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안전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¹⁾

1) 해당 조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하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위법사항 통보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의 경우 4월~7월동안 시행하였음.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하며, 운행정지대상이 되는 승강기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됨. 2)

< 법령상 승강기 설치 이후 시행하도록 하는 점검·검사·조사>

구분	내 용
자체점검 법 제31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 법 제32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검사 (2년 이하 주기, 실제 일반적인 경우 1년마다, 25년이상은 6개월마다)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3년 마다)
실태조사 법 제74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1250(2024.4.18.)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예방팀-967(2024.6.24.) 및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13844(2024.6.26.)“운행 정지대상 승강기 관리 협조요청 알림

- 법상 서울시장(시·도지사)이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승강기 안전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3조의2제6항)',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고 등(제6조~제10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고 등(제39조~제45조)',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제74조)'이며(불임1).
- 또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승강기 안전관리의 체계도³⁾ 상 승강기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또는 안전검사인데, 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검사 및 인증기관,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즉,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법상 시장의 업무가 아닌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확인됨.

- 한편, 서울시는 법상 의무사항과는 별도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실태점검단'⁴⁾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의

3) 주체별 역할(행정안전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 p.18.

구분	내 용
행정안전부	승강기 인증,검사 등 제도·정책 총괄,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 수행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법 제55조에 따라 설립, 행정안전부 업무 위탁 또는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승강기 설치신고,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접수 등 행안부 위탁업무와 승강기 안전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 고유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처분 관리, 승강기 운행 및 사고 관리,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관리주체*	승강기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법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관리업무 대행,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소유자, 타법령에 따른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인전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조·수입업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및 판매 - 유지관리용 부품·매뉴얼 제공, 유지관리업체 기술지도·교육 등
설치업체	승강기 설치공사 수행, 설치 후 시운전 및 기능시험- 승강기 설치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유지관리업체	승강기 자체점검,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대응 -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정기 검사 대응 등

4)조례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협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도 >

(출처:행정안전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p.19)



비정기적 요청⁵⁾ 또는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예.장기사용 승강기, 안전 개선조치대상 승강기) 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붙임2). 특히,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8~900여개 소⁶⁾에 대하여는 매년 점검을 지속 시행해오고 있음.

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여름철 폭염 대비 육교 승강기 자체 특별점검 실시 요청(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2025.6.30.),

‘25년 혹서기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통보 및 협조요청(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2025.5.29.)

6) 2025년 기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총 약 6만3천 551대로, 이 중 982대에 대해 실태점검하였음. 점검비율 약 1.55%로, 매우 적은 수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실태점검단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 점검 내역(‘22~25)(출처:건축기록과 내부자료)>

연도	점검 대상	건수	점검기간
2025년	2000년 이전(25년 경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982	10.13~11.30
2024년	1999년~2007년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836	10.31~11.30
2023년	1989년~1998년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927	09.12~10.31
2022년	1987년 이전 설치, 정밀검사 미이행 승강기(2021.8.31. 기준)	975	10.01~11.04

- 다만, 개정조례안의 ‘정기점검’은 기존 법에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인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와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존 집행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실태점검 사업과 시행 주체(시장) 및 대상(승강기)이 동일하므로, 해당 용어로 통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안전성 개선 조치’를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민간인 경우 해당 승강기의 ‘점검’을 위해서는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점검에 따른 조치 또한 해당 승강기의 기계장치를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될 수 있어 권고사항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지원시책과,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한 것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조의2(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① ━━━━━━━━━━━━ ━━━━━━━━━━━━━ 실 태점검을 시행하고 ━━━━ 권고할 수 있다.

<p>② 시장은 제1항의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주기,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_____ _____.</p> <p>③ _____ 실태 점검주기, 안전성 개선조치기준 _____ _____.</p>
---	---

○ 종합하면, 서울시 내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므로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노후 승강기의 정의 및 점검의 명칭은 자구 수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강행규정을 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되므로 권고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부서는 조례개정 이후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점검 및 권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해왔던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점검’ 사업을 재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홍 예 지	02-2180-8205

[붙임1] 관계법령 및 조례(p.7)

[붙임2]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점검 현황(p.11)

불임1

관계법령 및 조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가. 주기적인 점검
 -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승강기 소유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2024. 1. 30.>

1. 피성년후견인
2.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 ②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7. 제조·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

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2024. 1. 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 · 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록 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 · 도지사는 제44조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74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9호, 2021. 12. 3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 운영**
 4.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6. 서울특별시의 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에서 설치 · 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산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영위하는 자,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 등에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범 제74조 및 같은 범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협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 ·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 · 안전관리 · 기계 · 전기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승강기 관련분야(제조 · 유지관리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 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불입2**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현황(25.10.월기준)**

연도	점검항목	점검수량(건)	비고
2025년	계	2,078	
	(법상의무)승강기사업자 실태조사	210	
	공동주택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점검	982	2025.10.점검 중
	육교승강기 실태점검	244	
	공동주택 안전개선조치대상 승강기 실태점검	238	
	산업안전 규정 이행 실태 점검	122	2025.10.점검 중
2024년	다중이용 공공기관 승강기 실태 점검	282	2025.11.점검 예정
	계	1,705	행정처분 7건, 시정요구 623건, 행정지도 10건
	(법상의무)승강기사업자 실태조사	220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점검	836	
	안전개선조치 대상 승강기 실태 점검	248	
	육교 승강기 실태 점검	236	
2023년	산업안전 규정 이행 실태 점검	165	
	계	1,522	행정처분 5건, 시정요구 849건, 행정지도 3건
	(법상의무)승강기사업자 실태조사	212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점검	927	
	육교 승강기 실태 점검	172	
2022년	산업안전 규정 이행 실태 점검	211	
	계	1,342	행정처분 26건
	(법상의무)승강기사업자 실태 점검	223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점검	975	
	육교 승강기 실태 점검	144	

*주택실 건축기획과 제공자료